

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: 경상북도 건설도시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2년 8월 11일, 김창기 의원 외 9명

나. 회부일자: 2022년 8월 1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

(2022년 8월 25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: 김창기 의원

나. 제안이유

○ 건축안전 업무를 체계적·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상북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의 효과적인 안전 관리 및 건설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경상북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·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의5)

4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황보 석)

가. 조례개정 필요성

- 「건축법」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안전 업무를 체계적·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상북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의 효과적인 안전 관리 및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경상북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·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의5)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금번 「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상위법령인 「건축법」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건축안전 업무를 체계적·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상북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의 효과적인 안전 관리 및 건설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조

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

- 개정 취지와 내용, 관계부서 협의의견 반영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비용추계는 향후 5년간 1,190백만원의 소요비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추계되므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.

- 5. 질의 및 답변 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 : 생략
- 7. 수정안의 요지 : 붙임 참조
- 8. 심사결과: 수정안가결
- 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2년 8월 25일

제 안 자 : 건설소방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조례안의 내용 중 불명확한 문구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8조의5 중 “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·운영”을 “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”로 수정함.

3. 수정안 : 붙임

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 : 없음

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 중 “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·운영”을 “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u><신 설></u>	제6장 지역건축안전센터 제8조의5(<u>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·운영</u>) 영 제119조의3에 따른 도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전에 관련된 제도개선 2. 건축물의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지원. 다만, 다른 법령에 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 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3. 건축물 생애 전반	제6장 지역건축안전센터 제8조의5(<u>지역건축안전 센터 업무</u>)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1. ~ 7. (개정안과 같음)

제6장 보칙	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4.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5. 시·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6. 「건축물관리법」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7.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장 보칙	제7장 보칙(개정안과 같음)
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을 제7장으로 하고, 제6장(제8조의5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장 지역건축안전센터

제8조의5(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) 영 제119조의3에 따른 도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전에 관련된 제도개선
2. 건축물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3.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
4.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
5. 시·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
6. 「건축물관리법」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6장 <u>지역건축안전센터</u> <u>제8조의5(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) 영 제119조의3에 따른 도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<u>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전에 관련된 제도 개선</u> 2. <u>건축물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</u> 3. <u>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</u> 4. <u>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</u> 5. <u>시·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</u> 6. <u>「건축물관리법」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</u>

<u>제6장 보칙</u>	7. <u>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u>제7장 보칙</u>
----------------------	--